

##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2
------------	-----

제출년월일 : '98. 10.  
제 안 시 : 안 산 시 정

### □ 개정이유

현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내에서 1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일반음식점 및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공정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15m 미만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서도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을 허용하고,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이주민단지에 편중되어 있던 일반목욕장 및 기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기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을 일반주거지역 중 4종미관지구내에서도 허용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등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15m 미만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수리점(카센타)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지역·지구내에서 설치 가능토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일반목욕장과 당구장 및 기원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지역·지구내에서도 당구장과 기원을 설치 가능토록 하고 일반목욕장 또한 단일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토록 하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 □ 개정안 : 불임

#### □ 관계법령 발췌 : 불임

- 건축법 제45조(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시행령 제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인산시 건축조례 제36조(건축물의 용도)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계획('98. 7. 25)

##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건축조례승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중 “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8조제3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기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4조제3호 단서중 “연구소”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한다.

제25조제3호 단서승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연구소”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한다.

제26조제2호 단서승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연구소”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하고, 동조 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호 단서승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8조제5호 단서승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망기지인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신입부정관이 관계승인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33조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영 제6조제3항”을 “영 제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제1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수리점(다면, 도로폭15m이사에 접한 대지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은 제외한다.)”를 “수리점(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동항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균린생활시설 용도는 암미시술소, 골프연습장, 결혼상담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공장(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도시형 업종은 제외한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수리점(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은 제외한다), 청소년 전자유기장,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제외한 용도에 한한다.

타. 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일반목욕장

제5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단서중 “제2조제2호”를 각각 “제2조제5호”로 하고 “공입단지”를 각각 “신입단지”로 한다.

제51조제1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농업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제5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인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제곱미터

제56조제2항중 “16층”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삽입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

제60조제2항제1호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저장시설”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삽입한다.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성 인
<p>제3조(건축위원회)</p> <p>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2. 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특례대상 건축물중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공고한 건축물</p> <p>3. 기타 법,영,시행규칙,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p> <p>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 ⑭ (생략)</p> <p>제14조(조경공사비의 예탁 등)</p> <p>①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시비는 건축시기 신정한 공시예정금액으로 한다.</p>	<p>제3조(건축위원회)</p> <p>(삭 제)</p> <p>②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p> <p>-----</p> <p>③ ~ ⑭ (현행과 같음)</p> <p>(삭 제)</p>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를 에탁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일 로부터 6개월이내에 조경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p> <p>③ 건축주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경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탁 된 금액으로 시장이 조경공사를 완료 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수 있다.</p>	(삭 제)
<p>제17조(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2 (생 략)  <u>3. 국민학교</u>          4~5 (생 략)</p>	<p>제17조(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  <u>3. 초등학교</u>          4~5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p> <p>-----</p> <p>-----</p>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인 행	개 정 안
1~2 (생 략)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초등학교 -----
4~5 (생 략)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5 (현행과 같음)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16 (생 략) 제24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벌표9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7~16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1~2 (생 략)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공장 -----
4~9 (생 략)	4~9 (생 략)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교육연구시설( <u>국민학교</u> , 중학교, 고 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공업 에 관련되는 <u>연구소</u> 및 직업훈련소 에 한한다)	제25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2. (생 략) 3. ----- <u>초등학교</u> ----- ----- <u>연구소, 교육법에 의 한 기술대학 및</u> -----
4~12. (생 략)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 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교육연구시설( <u>국민학교</u> , 중학교, 고 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 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u>연구소</u> 및 도서관에 한한다)	4~12. (생 략)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 축금지 및 제한)  1. (현행과 같음) 2. ----- <u>초등학교</u> ----- ----- <u>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u> -----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판매시설(농.축, 수산물 판매시설과  <u>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u>  <u>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u>  <u>설에 한한다)</u></p> <p>4~14 (생 략)      제27조(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2 (생 략)      3. 교육연구시설(<u>국민학교</u>, 중학교, 고      등학교에 한한다)</p> <p>4~11 (생 략)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3. 판매시설(상 제)</p> <p>4~14.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1~2 (현행과 같음)      3. ----- <u>초등학교</u> -----</p> <p>4~11 (현행과 같음)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 (생 략)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6. (생 략) 7. 창고시설(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8. (생 략)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조등학교----- ----- -----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6. (생 략) 7.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1~6 (현행과 같음) 7.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에 한한다)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회 행	개 정 안
④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제2항제1호</u> 내지 제10호의 건축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수 없다.	④ ----- ----- ----- ----- <u>제3항</u> ----- ----- -----
⑤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1) (생 략) (2) <u>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일반음식점(단 도로폭 15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는 제외한다), 일반목욕장, 기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결혼상담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공장(단, 비단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도시형 업종은 제외한다),</u>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결혼상담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공장(단, 비단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도시형 업종은 제외한다),</u>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종 균린생활시설에  <u>해당하는 수리점(다만,</u>  <u>도로폭 15미터 이상에</u>  <u>접한 대지로서 자동차관</u>  <u>리법에 의한 부분점비업</u>  <u>은 제외한다)당구장,</u>  <u>청소년 전자유기장, 동</u>  <u>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u>  <u>한 용도를 제외한 용도</u>  <u>에 한한다.</u></p>	<p>제2종 균린생활시설에  <u>해당하는 수리점(다만,</u>  <u>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보</u>  <u>분점비업은 제외한다),</u>  <u>청소년 전자유기장, 동</u>  <u>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u>  <u>한 용도를 제외한 용도</u>  <u>에 한한다.</u></p>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 표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인
라~카 (생 략) <u>(신 설)</u>	라~카 (현행과 같음) <u>타.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중 일반 목욕장</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차 (생 략)	가~차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0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① ----- -----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2조제2호</u> 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 ----- <u>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u> ----- -----)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2조제2호</u> 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 ----- <u>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u> ----- -----)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2조제2호</u> 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 ----- <u>제2조제5호에 의한 산업단지</u> ----- -----)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p> <p>1~13 (생 략)</p> <p><u>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u> <u>100제곱미터</u></p>	<p>제5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p> <p>-----</p> <p>1~13 (현행과 같음)</p> <p><u>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제곱미터</u></p>
<p>제5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생 략) 1~3 (생 략)</p> <p>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p>	<p>제5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p>② -----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기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p>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공개공지등의 확보)	제60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은(당해 용도가 포함된 복합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다.	① ----- ----- ----- ----- -----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 ----- -----.
1. 공개공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u>제12조</u> 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1. ----- <u>제13조</u> -----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제6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u>저장시설</u> , 유화시설 기타 이외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① ----- ----- <u>저장시설</u> ( <u>시멘트 저장용 싸이로</u> 를 포함한다) ----- ----- -----.

## 안산시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1~4 ② (생 략)	(생 략)	② 1~4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